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22호
----------	--------

제출년월일 2024. 2.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놀이터(쉼터)를 설치하여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김포시 동물복지 거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 다. 반려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안 제6조)
- 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 안 제16조)
- 바. 반려동물 놀이터(쉼터) 설치·운영(안 제17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반영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2. ~ 2. 13. (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나) 경 기 도 :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진료에 관한 사업
6.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12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

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진료범위) ① 공공진료센터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진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내장칩)
2. 광견병 예방접종
3. 기초상담 및 검진
4.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5.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6. DHPPL(종합백신) 접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진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반려동물에 한하며, 연간 접종 횟수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제10조(자격확인)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진료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확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진료인력) ① 시장은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센터에 두고,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진료센터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진료비) ① 제9조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무료
2. 제9조제4호: 제2항에 따라 정한 금액(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3. 제9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에 따라 정한 금액

②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정한다.

제13조(진단서 등) 시장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의무 등) ①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정규강좌, 캠페인 등 반려문화 행사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아 반려문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 ①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대외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이하 “명예소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한 홍보

2. 반려동물 세미나, 돌봄특강 등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명예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명예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동물병원·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소관 실·과·소		가족문화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가족문화과장 최 신
	담 당 성 명	반려문화팀장 유 난 영
	담 당 자 전 화	지방행정주사보 이혜진(☎)5557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20. 2. 25., 2023. 4. 27.>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24.]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 26.]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개설자	시설기준
수의사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세균배양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5.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 중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 및 진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사이트

<https://www.animalclinicfee.or.kr/>

소개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자들께서 직접 원하는 지역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2023년 현재 기준 * 총 1,008개소)
* 2024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공개항목 (지역 별/ 항목 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

1.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켈넬코프백신 접종비,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지역별 상세 정보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초진 진찰료 개 고양이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켈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알고 싶은 지역
경기도 구/군

중간비용	9,900원
최저비용	3,300원
최고비용	44,000원
평균비용	10,702원

해당 지역별 중간비용

해당 지역별 비용 분포도

전국 지도 확인을 원하시는 시/도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 지역별 상세 정보

구분	중간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평균비용
가평군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고양시	8,000원	5,000원	44,000원	10,561원
광명시	9,350원	5,000원	14,300원	9,288원
광주시	10,000원	5,000원	15,500원	10,071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 소유자를 위한 배려 및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조화,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15조(동물보호·복지 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등
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 지원 등
3. 동물의 날 등 건전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 등
4.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관리
5. 반려동물 놀이터 등 운영·관리
6. 유실·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관리 등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동물입양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보건소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김포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1. 홍보활동비

구 분	시 간	지 급 액		비 고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일반 시민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4시간 미만	100만원이내	20만원이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200만원이내	30만원이내	
	8시간 이상	300만원이내	50만원이내	

2. 홍보물 출연료

구 분	횟 수	지 급 액	비 고
홍보 영상물	1회	300만원 이내	
홍보 광고(CF)	1회	광고 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상 지급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제7조 및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계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비, 공공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료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립 및 운영비	525,272	132,630	132,630	132,630	132,630	1,055,792

다. 재원조달방안

- 실시설계 및 공사비, 물품취득비 등 :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완료
- 공공진료센터 진료보조 인건비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가족문화과 과장 최신 팀장 유난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36,910	73,820	73,820	73,820	73,820	332,190
	-	-	-	-	-	-
세 출	525,272	132,630	132,630	132,630	132,630	1,055,792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실시설계	20,000	-	-	-	-	20,000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공사비	266,380	-	-	-	-	266,380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의료기기 등 구입	110,118	-	-	-	-	110,118
진료 약품 및 비품 구입	87,137	87,137	87,137	87,137	87,137	435,685
공공진료센터 운영비 (비품 임대료, 사무관리비 등)	19,493	11,493	11,493	11,493	11,493	65,465
공공진료센터 인건비(기간제)	22,144	34,000	34,000	34,000	34,000	158,144
재원 조달	525,272	132,630	132,630	132,630	132,630	1,055,792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525,272	132,630	132,630	132,630	1,055,792
	지방세수입	488,362	58,810	58,810	58,810	723,602
	세외수입	36,910	73,820	73,820	73,820	332,19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422호
----------	--------

제출년월일 2024. 3. 5.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반려동물 공공진료 수혜자의 범위와 무료 진료 항목이 취약계층 외 일반 시민까지 확대할 경우, 민간 의료영역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진료 범위와 진료비를 조정하고자 함.
- 의료서비스 수혜자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 조항을 명문화하고, 진료 범위에 따른 진료비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 제목 변경(진료범위 → 진료범위 및 진료비)
-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근거 명시(안 제9조제2항)
- 공공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 별표 신설
- 안 제12조(진료비) 조항 삭제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2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진료범위)”를 “(진료범위 및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진료는”을 “시장은”으로, “사람의 반려동물에 한하며, 연간 접종 횟수 등에 제한을 둘”을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u>제12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u></p> <p>④ ~ ⑥ (생략)</p> <p>제9조(진료범위) ① 공공진료센터는 <u>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진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동물등록(내장칩)</u> 2. <u>광견병 예방접종</u> 3. <u>기초상담 및 검진</u> 4. <u>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u> 5. <u>심장사상충 예방접종</u> 6. <u>DHPPL(종합백신) 접종</u> <p>② <u>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진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반려동물에 한하며, 연간 접종 횟수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신 설></p>	<p>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9조-----</u>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u>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u></p> <p>② <u>시장은 -----</u> ----- <u>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u>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u></p>

제12조(진료비) ① 제9조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무료

2. 제9조제4호: 제2항에 따라 정한 금액(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3. 제9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에 따라 정한 금액

②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정한다.

제13조 ~ 제18조 (생 략)

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삭 제>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진료에 관한 사업
6.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제10조(자격확인)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진료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확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진료인력) ① 시장은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센터에 두고,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진료센터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진단서 등) 시장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3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의무 등) ①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정규강좌, 캠페인 등 반려문화 행사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아 반려문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 ①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대외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이하 “명예소장”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한 홍보

2. 반려동물 세미나, 돌봄특강 등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명예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명예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동물병원·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소관 실·과·소		가족문화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가족문화과장 최 신
	담 당 성 명	반려문화팀장 유 난 영
	담 당 자 전 화	지방행정주사보 이혜진(☎)5557

[별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제9조 관련)

구분	진료범위	진료비		비고
		일반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1	기초상담 및 진찰	무료	무료	
2	동물등록(내장칩)	제9조제3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	무료	
3	광견병 예방접종	제9조제3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	무료	
4	X-Ray 및 혈액검사 (전혈구 검사)	제9조제3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	무료	
5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제9조제3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	
6	종합백신 접종		제9조제3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	

비고: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진료는 연간 접종 횟수가 제한될 수 있음.